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10 선고 2018가단41304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D

변론 종결 2019. 11. 22

판결 선고 2020. 1. 10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7. 17.부터 2020. 1. 10.까지 연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70%는 원고가, 나머지 30%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35,67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6. 3. 24. 피고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 한다)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. 3. 28.부터 2016. 6. 20.까지, 계약금액을 35,2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으로 정하여 원고가공사하는 내용의 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. 6. 2. 1, 60_0원, 2016. 9. 13. 7, 000, ■원, 2016. 10. 6. 5, 00_0원, 2016. 10. 31. 12,000,000원 합계 25,6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2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9,600,000원(= 35,200,000원 - 25,600,00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 피고는,원고가 위 미지급 공사대금 9,600,000원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아니하여 위 금액 모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,이 사건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(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다48930, 48947판결 등 참조),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계약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,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원고는 2016. 11. 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를 맡겨 26,07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에 상당하는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를 의뢰하였고, 그 추가공사대금이 26,070,000원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. 7. 17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. 1. 10.까지 상법에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박병 태